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에서 의결된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
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

인

2015년 11월 5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083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)”를 “(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)”로 하고,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”를 “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에 필요한 연계기업의 발굴 및 선정,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4항 본문 중 “연임”을 “1회에 한하여 연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·기피하여야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보고 및 검사 등)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·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·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